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연구

- 시설퇴소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연구

- 시설퇴소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 연구진

서 종 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위원, 연구책임)

## 외부자문위원

김 경 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용 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찬 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백 은 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내부자문

유 연 희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 장애인복지팀장)

장 지 현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 장애인복지팀 과장)



# 연 · 구 · 요 · 약

## 1. 연구 개요

- 서울시는 2009년 12월부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주거전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원
- 2014년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 추진 과제에 장애인 전환서비스(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사업을 포함하여 탈시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체계 개선
  - 이 계획은 기존 주거지원 형태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이 자립생활주택으로 통합·운영되면서 이용자 실정에 맞춘 이용기간과 자립지원이 다양화될 수 있는 기회 마련
  - 올해부터 운영되는 자립생활주택은 운영주체가 운영사업자로 일원화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자립준비 기간 확보 등으로 거주 지원에 대한 운영 탄력성<sup>1)</sup>은 제공된 반면,
  -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 지원 서비스(personal support services) 대책은 운영사업자 또는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명명) 역할 제안
- 이런 시점에서 시설폐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응기간이 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
-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시설폐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환서비스의 한계점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제시

1) 기존 자립생활 체험홈은 2년간 자립생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자립생활가정은 5년간 완전독립 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이 제공된 반면, 자립생활주택은 최장 7년 범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됨. 예를 들어, 거주인이 훈련기간 5년과 주거지원 2년 또는 훈련 3개월과 주거지원 6년 9개월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됨.

-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인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시설퇴소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전환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
-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제안

#### ■ 연구내용

-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전환서비스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 방향성 파악
- 둘째, 현장전문가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의 한계점과 방향성 제안
- 셋째, 시설퇴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제안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자문 및 실무회의, 현장조사, 면접조사 및 간담회 실시

## 2. 이론적 고찰 및 조사결과

#### ■ 이론적 고찰

- 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입소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본 사업 지원 범위는 거주시설 입소단계부터 지역사회 자립까지
  - 본 사업에서 전환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라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전환서비스는 돌봄(care)이 아닌 지원(support)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구축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계획 방향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단순한 일상 활동과 거주 지원뿐만 아니라 자기결



- 정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기회 제공 방식 프로그램 개발
-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목표는 발달장애인이 자기표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결정을 강화하는 것
  -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 계획 방향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원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조사결과

- 면접조사 목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의 한계점과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
- 면접조사 대상은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과 현장전문가(자립생활주택 및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지원 인력, 관련 현장전문가)
- 소결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지원방향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와 자립생활주택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등을 검토 보완(요약표 1)

〈요약표 1〉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내용과 실천 과제

구분	내용		과제
지역 사회 이전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구축	전환체계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간 정보채널 다양화 -사정 과정 강화
		의사결정체계	-지역사회 전환 전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참여 경로 구축
지역 사회	자립생활주택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원	-입주자 욕구 파악 체계 개선 -지속적 체험과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자기조절 체험 강화 -자기표현·자기결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사회 자원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응급안전을 포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의사소통체계 구축 -발달장애인과 지원인력 관계개선 프로그램 강화

### 3.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정책과제

#### ■ 본 장 구성

- 첫 번째,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안) 제시
  - 지역사회에서 적용하는데 시간이 긴 발달장애인에게 단순 주택제공보다는 필요한 전환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제안된 개선(안)은 단순히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능
- 두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안) 제안
  - 장애인 전환서비스 개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자립생활 목표 서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지원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서술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목표는 전환 과정 속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
- 마지막으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1)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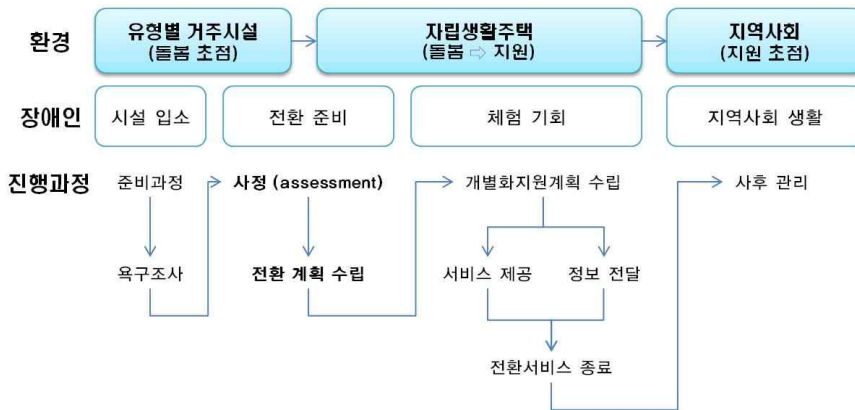
##### ■ 사정(assessment) 기능 강화

-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필요(요약그림 1)
  - 장애인의 전환 절차는 시설, 전환 준비<sup>2)</sup>,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 구분
- 각 절차별 전환서비스 체계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장애인의 욕구 조사
  - 서울시 및 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개인 사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전환 계획(transition planning) 수립

---

2) 장애인 탈시설화 체제도에서는 탈시설 준비가 거주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준비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에서 모두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전환 계획이 수립된 이 후, 자치구와 운영사업자는 장애인 개별화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전달
- 전환서비스가 종료되면 자치구, 운영사업자 또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후 관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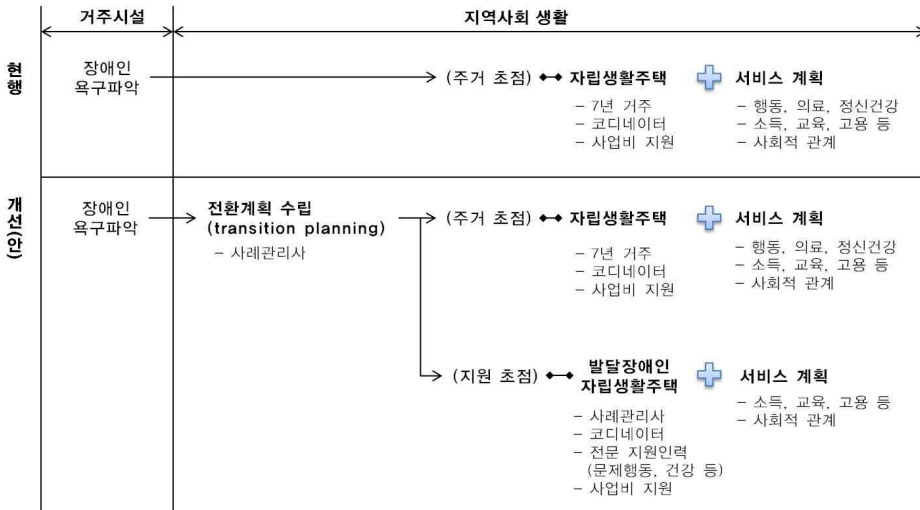
[요약그림 1]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

- 현행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와 비교해 보면, “전환준비” 단계 신설
  -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된 역할은 사정(assessment)으로서 장애인의 시설퇴소 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사정 단계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능력을 사정하여 지원할 서비스의 유용성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계획 수립

■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향

-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장애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사에 의한 전환계획에 따라 주택 운영방식 변경(요약그림 2)
  - 장애인 욕구조사와 더불어 전환계획 수립단계를 통해 기존처럼 ‘주거 초점’으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방안과 ‘지원 초점’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구분
  - 기존처럼 ‘주거 초점’인 자립생활주택은 7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담인력인 코디네이터 1명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개별화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전환계획 수립을 통해 ‘지원 초점’인 자립생활주택은 사례관리사와 전문 지원인력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받고 운영기간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방식



[요약그림 2]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절차(안)

### ■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따른 업무 조정

- 현재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운영 주체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운영사업자로 분류
  -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센터는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 역할
  - 운영사업자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체계로 개선이 된다면, 복지재단과 운영사업자 이 외 공공의 역할도 변화 필요(요약그림 3)
  -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센터는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정체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와 전문 지원인력의 채용·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함. 이와 함께 사례관리사에 의해 사정된 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점검 및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역할 또한 신설

-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사회로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과 제도 준비를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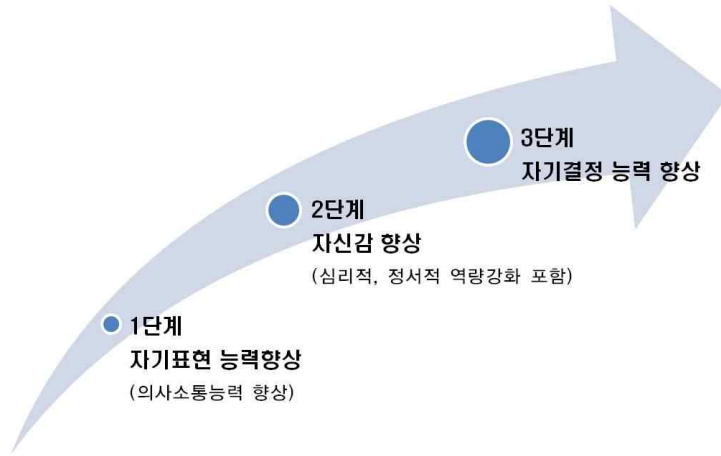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구분	내용	운영주체	구분	내용	운영주체
지원센터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	서울시 복지재단	지원센터	-시설외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사정체계 포함) 구축 -이행점검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사례관리사, 전문지원 인력 채용 및 양성	서울시 복지재단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자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자
서비스 네트워크 조직			서비스 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로 거주희망 장애인 전환 시스템 구축	서울시 자치구

[요약그림 3]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역할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안)

###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목표 및 사정 체계

- 전환 기간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활전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결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을 통해 최종 목표인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요약그림 4)
  -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활동’과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대’ 활동 강화



[요약그림 4]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단계별 목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정체계: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

-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을 위해 소득보장이나 주택, 맞춤형 서비스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선택
-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는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내 실패의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 지원(support)을 기반으로 한 주택 제공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앞서 설명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정 결과인 사례관리사에 의해 전환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형태 결정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체계 고려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다음과 같이 운영 필요
- 첫째, 전환계획 단계에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주택 제공
- 둘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방식으로 전환계획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대한 의지, 현재 문제 상황, 신체·정신 등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능력, 심리·사회적 기능 등을 사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 구축

#### ● 자신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도움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형성 필요
- 발달장애인이 지역 주민과 연대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이 활동은 지역주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그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습득

### 3) 정책과제

#### ■ 운영 절차 및 전문 지원인력 양성관리

##### ● 탈시설 지원과 관련된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퇴소를 위해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사정, 점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파악과 서비스 전달체계 확인
- 개별 단계는 욕구파악 이전 단계, 시설퇴소 욕구반영 단계, 시설퇴소 단계, 지역사회 내 자원, 참여단계, 정보제공,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

##### ●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 필요

-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인력은 사례관리자와 상담사

##### ● 서울시 우선 검토 과제

-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 퇴소에서 지역사회 전환까지 당사자의 욕구사정과 점검 절차와 함께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운영 전반 내용 검토
-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 서울시 담당부서와 기관 및 지원인력 운영 등을 위한 역할정립과 예산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 ■ 전환단계 기능 강화

### ● 사정(assessment) 체계 구축

- 초기 사정가(Screening and Assessment Specialist)를 배치하여 거주시설 입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테이크 실시
-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로 전환한 이 후 발달장애인에 대해 종합 인테이크 실시
- 초기 사정 또는 운영사업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슈퍼비전 기능 강화
- 지원센터 내 사회복지전공 교수, 사례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와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관한 ‘전문가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 제공

### ● 지역 중심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차원으로 운영사업자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지도·감독 권한이 운영사업자 관할 자치구청장이 가지게 되면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이 지역 중심 지원체제로 구축되기 시작
- 지역 중심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자립생활주택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이 지역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
- 서울시 차원에서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로 재입소하지 않도록 지원 기관과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내용 확인 필요
- 지역 중심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및 역할(요약표 2)



〈요약표 2〉 지역 중심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및 역할

구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자치구, 운영사업자)
방향	○시설외소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있는 기반 마련
역할	○시설외소 장애인의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 체계 기능 강화 - 시설외소 장애인 전환계획 수립 지원 -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위탁 심의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점검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거주시설, IL센터, 보건소 등 지역 내 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	○‘자치구-운영사업자간 운영협약 체결하여 자치구 통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 자원확보 및 지원 감독 - 자립희망자 입주 결정 심의 참여 - 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 입주자 지원: 자립생활 서비스 설계관리 - 자립준비 단계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수립 운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항목은 이용자의 알권리
-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어려움
- 발달장애인을 위해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 필요
- 품질개선
  - 인증(진입), 점검, 교육, 평가, 환류, 사후관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 필요
  - 이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담인력 상시 확보
- 서울시 역할
  - 전환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전 과정의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연계
  -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공



#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연구수행과정 .....	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 .....	9
1. 이론적 고찰 .....	11
2.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현황 .....	17
제3장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27
1. 교남소망의집(거주시설) .....	29
2. 광주 엠마우스집(거주시설) .....	34
3. 대구 안심마을 .....	39
4. 시사점 .....	45
제4장 조사결과 .....	47
1. 조사 개요 .....	49
2.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51
3. 발달장애인 면접조사 결과 .....	60
4. 소결 .....	61

<b>제5장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정책과제</b> .....	65
1.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안) .....	68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안) .....	72
3. 정책과제 .....	80
<b>■ 참고문헌</b> .....	85
<b>■ 부록</b> .....	89
부록1. 2012년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자료 .....	91
부록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95
부록3. 시설퇴소 전략 실천 핸드북(영국 사례) .....	99
부록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01

# 표 · 목 · 차

〈표 2-1〉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 ..... 18

〈표 2-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계획(2015년 기준) ..... 20

〈표 2-3〉 서울시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의 주요 개선 사항 ..... 21

〈표 2-4〉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 추진체계 변경 사항 ..... 23

〈표 2-5〉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업무 .. 24

〈표 3-1〉 단계별 네트워크 현황 ..... 32

〈표 3-2〉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 ..... 33

〈표 4-1〉 면접대상자 현황 ..... 51

〈표 4-2〉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현황 및 한계 ..... 52

〈표 4-3〉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56

〈표 4-4〉 발달장애인 및 지원인력 대상 면접조사 결과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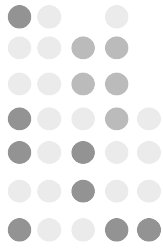
〈표 4-5〉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내용과 실천 과제 ..... 62

〈표 5-1〉 지역 중심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 83

# 그림 · 목 · 차

[그림 1-1] 연구수행과정도	8
[그림 2-1]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체계도	12
[그림 2-2]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	19
[그림 2-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변경 내용	21
[그림 3-1] 교남소망의집 통합지원센터 운영 체계도(안)	30
[그림 3-2]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유형(housing options)	31
[그림 3-3] '무지개공동회' 산하 시설 현황	35
[그림 3-4] 엠마우스집 위치도	36
[그림 3-5] 개별 유닛 평면도(예시)	37
[그림 3-6] 대구 안심마을 지도	40
[그림 3-7] 안심마을 어린이도서관 '아띠'	41
[그림 3-8] 안심마을 주택협동조합 '공터'	43
[그림 4-1] 자료수집 절차	50
[그림 5-1]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	68
[그림 5-2]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절차(안)	70
[그림 5-3]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역할	71
[그림 5-4]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단계별 목표	73
[그림 5-5]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 절차	75



# 제1장 | 연구개요







## ①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는 2009년 12월부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주거전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sup>1)</sup>.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으로 운영사업자가 운영하고,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으로 서울시장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자립생활 체험홈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동 조례 제16조), 자립생활가정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 조례 제17조). 2014년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에 장애인 전환서비스(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사업을 포함하여 탈시설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서울시 내부 자료). 이 계획을 통해 기존 주거지원 형태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이 자립생활주택으로 통합·운영되면서 이용자 실정에 맞춘 이용기간과 자립지원이 다양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자립생활주택은 운영주체가 운영사업자로 일원화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자립준비 기간 확보 등으로 거주 지원에 대한 운영 탄력성<sup>2)</sup>은 제공된 반면,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 지원 서비스(personal

1) 2009년 서울시장 방침인 ‘장애인거주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5장 지역사회전환)에 근거하여 운영 중임.

support services) 대책은 운영사업자 또는 서울시장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명명) 역할로 제안되고 있다. 특히 지원센터는 개별적 전환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수행 방식이 변경<sup>3)</sup>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다.

탈시설화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 거주시설의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반면 서울시 탈시설화 추진계획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타인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로 주거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서종녀, 2014).

이런 시점에서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응기간이 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서종녀, 2012; 윤재영, 2013; 이서윤, 2013). 장애인 전환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권 강화를 위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단계부터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이 시작되어야 하고(서종녀, 2012; 이서윤, 2013), 지적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게 비해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자기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적응기간도 오랜 시간 필요(이서윤, 2013)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사한 형태로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68개 자립생활센터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성공시킨 사례는 1건으로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이 아닌 지적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자립생활주택이라는 거주 지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자립생활 체험홈은 2년간 자립생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자립생활가정은 5년간 완전독립 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이 제공된 반면, 자립생활주택은 최장 7년 범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됨. 예를 들어, 거주인이 훈련기간 5년과 주거지원 2년 또는 훈련 3개월과 주거지원 6년 9개월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됨.

3) 운영사업자가 자립생활 체험홈을 위탁·운영하였고 지원센터가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였던 이원화 체계에서 운영사업자가 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 체험홈과 가정 통칭)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됨.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환서비스의 한계점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즉,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인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시설퇴소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전환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전환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관련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현장전문가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의 한계점과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시설퇴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연구방법

#### (1) 문헌 연구

첫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어떤 전환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지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계획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앙 및 서울시 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 탈시설 또는 전환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서울시 산하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았다.

## (2) 자문 및 실무회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개념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유사한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자문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이고, 현장 전문가는 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운영방식은 집합회의로 진행되었고 2회 실시하였다. 자문 내용은 본 사업의 현황과 특성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전문가 실무회의는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담당자와 자립생활주택 담당자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면서 현장적용성이 높은 시범사업(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운영방식은 집합회의로 진행되었고 2회 실시하였다. 회의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주택 운영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과제가 현장에서 적용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그들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거주시설인 서울 교남의집, 광주 엠마우스집, 그리고 재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대구 안심마을 등이다. 조사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지원 과정과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현장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와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 (4) 면접조사 및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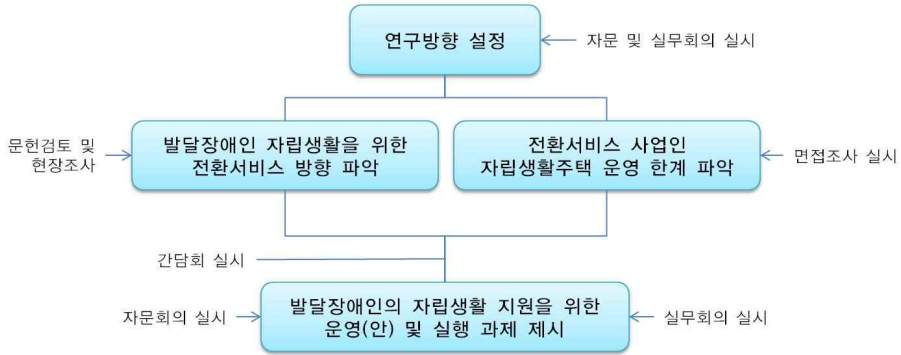
시설퇴소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 운영체계와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체계와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거주자와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입소자이고 현장전문가는 코디네이터(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생활지도교사(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지원인력),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다.

면접조사 진행방식은 현장전문가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각각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는 10명이고, 그들에게 거주시설 단계부터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참여자는 인터뷰가 가능한 대상자를 현장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았고 총 9명이 참여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간담회는 면접조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간담회 진행방식은 면접조사 참가자 중에서 간담회에 참여하겠다고 수락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 1명과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2명이 참석하여 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 3. 연구수행과정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환 과정의 한계점과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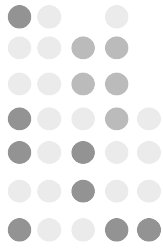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수행과정도

먼저, 문헌검토와 현장조사는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전환서비스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검토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전환, 전환서비스, 자립생활 개념을 정의하고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지향해야 하는 틀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면접조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환서비스 사업인 자립생활주택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자는 발달장애인과 현장전문가(자립생활주택과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지원인력, 관련 현장전문가)이다. 조사 목적은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현 전환서비스 사업의 한계와 그들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 지원 방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헌검토,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과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 목적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시설퇴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사업인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안)을 제안하고 전환지원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결과는 자문 및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제2장 |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







## ②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

### 1.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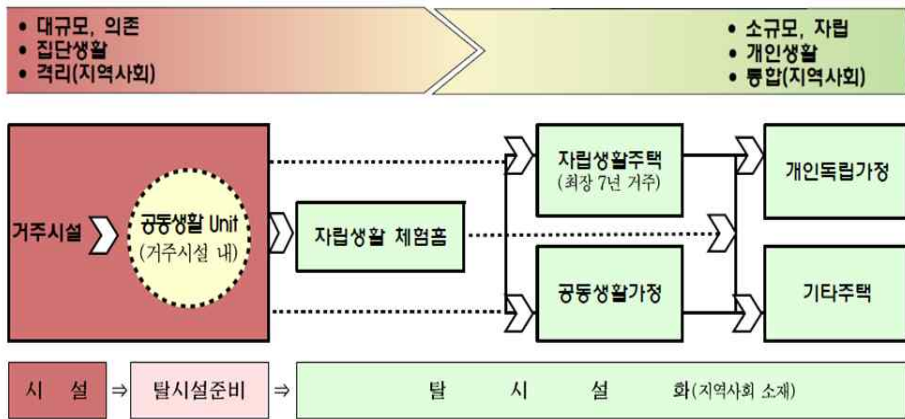
#### 1) 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전환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전환(transition)’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환은 “한 가지 형태, 환경, 조건 혹은 장소에서 다른 형태나 환경, 조건, 장소로 이동해 가는 과정”(The American Heritage College Dictionary, 2002: 박찬웅·이영희, 2009: 273 재인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는 변화하는 과정 모두를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초기 전환의 개념을 정의한 Will(1984)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중등 과정 후 교육(대학과정) 또는 성인서비스, 초기 고용간 연결과정으로 보았고, Halpern(1985, 1989)는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등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전환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였다(Whetstone & Browning, 2002).

Will과 Halpern 이 외 다양한 학자들이 전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전환서비스 내용과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전환 모델(Model of Transition)을 제안하고 있다. 전환 모델은 Work-Study Model, Career Education Model, Special Needs Vocational Education Model, The “Bridges” Model, Community Adjustment Model 등이 있고 각각의 모델에 따라 목적과 프로그램이 달리 구성되어진다(Whetstone & Browning, 2002: 5-7). 서술된 전환 모델은 주로 장애학생이 성인기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활동으로 학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전환이라는 개념은 폭넓은 의미로 정의될 수 있으며 전환의 목표에 따라 전환서비스 내용과 행동이 구체화될 수 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입소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 본 사업 지원 범위는 거주시설 입소단계부터 지역사회 자립까지이다. 본 사업에서 전환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라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전환서비스는 돌봄(care)이 아닌 지원(support)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에 따라 자립생활주택은 최장 7년을 거주할 수 있고, 거주시설 퇴소 이후 단계이면서 개인독립가정 또는 기타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그림 2-1).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하도록 개별화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비스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sup>4)</sup>, 지원인력(코디네이터)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 거주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영주체와 사회복지재단의 판단(심의 등)에 의거 시설별 이용기간 만료 전에 다른 단계로 이전 가능(예 : 자립생활 체험홈 → 개인독립가정, 자립생활주택 2년 → 기타주택)

[그림 2-1]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체계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4.09), p.3)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를

4)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는 자체적으로 1개 주택을 임대계약을 하여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아 임대계약을 통해 제공받게 됨.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전환서비스 지원 범위는 거주시설 퇴소단계부터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전환서비스 내용과 실천과정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전환서비스

### (1)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개인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박승탁, 2010: 330). 그러므로 자기결정 보장은 지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김용득·박숙경, 2008).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기능 문제 또는 환경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것이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 개념이다. 상대적 자립은 개개인의 자율성 차원에서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Goodman, 1967)할 수 있고 스스로의 결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논의(Sigelman & Parham, 1981)할 때 자주 사용되어진다(Crewe & Zola, 2001: 203 재인용). 상대적 자립은 “완전한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은 어렵다하더라도 이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자립”이라고 정의되고 있다(박선아, 2012: 94).

본 절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상대적 자립을 위한 방법을 파악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개념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첫째, 학습과 기능 훈련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여 효과를 파악하고, 둘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생활 향상 등이 있다. 먼저, 학습과 기능훈련을 통한 효과를 보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발달장애

인의 지역사회 적응 기능을 향상시켰다(김경애, 2011; 전정숙, 2007). 시설거주 지적장애인이 사회적 적응향상교육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하였고(김경애, 2011) 지역사회통합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생활영역, 사회자립영역 및 직업생활영역에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전정숙, 2007).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기술교육은 자기결정권 강화에 영향을 주어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황석웅·박승탁, 2012).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적응을 통한 자립생활향상 연구는 환경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김용득·박숙경, 2008; 박승탁, 2010). 생활시설보다 그룹홈과 자립홈 입소자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대처능력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개인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김용득·박숙경, 2008; 박진영, 2011). 또한 그룹홈 지적장애인은 경제적 자립생활, 사회적 자립생활, 정신적 자립생활, 신체적 자립생활 순으로 자립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박승탁, 2010). 즉,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선택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발달장애인의 상대적 자립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되고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제도적으로 일상생활,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안정 등과 같은 외적 측면은 강화되고 있지만, 장애유형별로 사회적 지지나 이용경험이 없는 장애인은 주체적으로 선택권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박선아, 2012; 박수경, 2006; 서종녀, 2014; Trout, Casey, Chmelka, DeSalvo, Reid & Epstein, 2009; 김미옥, 2011: 59 재인용). 즉, 지원내용의 실천적 과정에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정도와 장애에 대한 태도, 정보 접근성은 장애등급

및 연령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박선아, 2012; 박수경, 2006; Trout, Casey, Chmelka, DeSalvo, Reid & Epstein, 2009; 김미옥, 2011: 59 재인용), 자기선택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이 낮은 지역사회 거주 발달장애인은 거주시설 재입소가 결정되기도 한다(서종녀, 2014).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다양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활전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결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 서비스는 단순한 일상 활동과 거주 지원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첫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둘째,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옮김, 2012; 정연수·이영선·김승현·박원희, 2014, O'Brien, 1987; 김은하·박승희, 2012: 266 재인용). 선행연구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활동'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계획 방향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새로운 지역사회 환경과 주택(거주지원)에 적응하기 위해 장애인의 개별화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체험과 서비스 등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단순한 일상 활동과 거주 지원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전환서비스 내용과 실천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목표와 전환서비스 계획(transition services planning)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

환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목표는 발달장애인이 자기표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은 단순히 장소의 변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거주시설은 어느 정도 지리적 환경도 한정되어 있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지만, 지역사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표현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 계획 방향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원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주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정과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문제해결 능력과 일상적인 ‘활동’ 개선 노력을 위해 반복적으로 의사결정 단계에 대한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단계는 어떤 것에 대한 의사결정인지 확인하기,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의사결정의 대안 확인하기, 사건의 연쇄적 연결고리 확인하기, 만약/그 다음에와 관련된 진술 확인하기, 즉각적인 결과 확인하기, 지속적인 결과 확인하기, 장기적인 결과 확인하기, 의사결정하기, 의사결정이 예상했던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평가하기, 필요하다면 내렸던 결정 바꾸기 등이다(Tymchuk, 1985: 백은령 외 7인, 2013: 105 재인용). 이러한 과정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달리 지원될 수 있지만 전환서비스의 실천적인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현황

### 1) 중앙정부 및 서울시 탈시설 정책 현황<sup>5)</sup>

국가인권위원회(2013: 69-77)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생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5개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5개 전략목표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복귀 지원’은 시설 수용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로드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은 각종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장애인 욕구조사를 통한 단계별 지원 계획 수립, 주거비·소득 지원정책 실시, 그리고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연습과 자립생활 훈련 및 각종 서비스 연계 기능 병행 등이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인권정책에서 5년 내 시설 장애인 20%를 탈시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 4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평가단(TFT)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체계화하였다. 탈시설화 체계도(그림 2-1 참고)에 따른 주요 개선내용은 <표 2-1>과 같다.

탈시설화 추진에 따른 개별 사업 계획을 보면(서울시 내부자료), 첫째,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체험홈’의 신규 확충으로 여기서 탈시설 기준은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시설로 복귀하지 않고 연속 1년 이상 거주하며 직업 활동 및 지역자원 이용 등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자립생활 체험홈은 ‘공동생활 unit’를 조성하게 하여 신체활동, 인지능력, 도움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운영주체는 법인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고 지원 내용은 주택(운영사업자 1개소+서울시 1~2개 추가 확보), 예산(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연 35,700천원, 주택당 연 500천원 추가 지원),

5) 서종녀(2014) 발표자료 요약 정리함.

입주자 지원계획 제공 등이다. 셋째, ‘공동생활가정’ 운영개선으로 거주형과 자립형으로 구분된다. 강화되는 내용은 주말운영 인력을 0.5명 추가지원하며 무연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의 자립지원에 적합한 별도 그룹홈을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설퇴소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확대 정책이 있다. 지원대상은 자립생활주택(기존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을 퇴거하는 전세주택 입주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의 자로서 지원 비용은 75백만원(2인 이하)에서 85백만원(3인 이상)이다. 거주기간은 2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표 2-1〉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

구분	기존	개선
공동생활 Unit (탈시설 준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으로, 탈시설 목표인원에 포함 -신규사업	-개인 공간 및 자립훈련 등을 위해 존치 하되, 탈시설 인원 및 예산 미포함 -2017년까지 8개소 200명 지원
거주시설 체험홈	-거주시설 부속 개념으로 일부 시설에서 운영 -37개소('13년)	-지역사회 내 체험홈 대폭 확충,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지원 -53개소 추가, 230명 탈시설('17년)
자립생활 체험홈(2년)·가정(5년)	-자립생활 체험홈과 가정 이원화 -자립생활 체험홈(2년)과 가정(5년) 고정 거주 형태 -3개소 43명 탈시설('13년)	-자립생활주택으로 통합·운영주체 일원화 -이용자 실정에 맞춘 이용기간 및 자립 지원 다양화 -34개소 추가, 128명 탈시설('17년)
공동생활 가정	-평일운영, 주말귀가 등 -1개소 4명('13년)	-주말운영 지원 등 무연고 장애인 자립 지원에 적합한 주말 인력 지원 추가 -20개소 추가, 80명 탈시설('17년)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2014), p.2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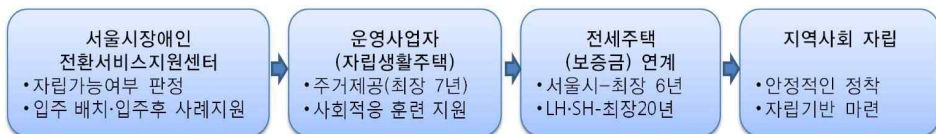


## 2)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현황<sup>6)</sup>

###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현황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시설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총 7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반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자립생활 체험 과정을 지원하여 개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서울시 내부자료, 2015). 2009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주거전환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명명)를 운영하였고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이라는 주거제공을 실시하였다. 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운영, 자립희망 장애인의 개별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사업 홍보 등이다(지원센터 내부 자료, 2015).

이 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이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의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되면서 사업수행방식의 개선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체계는 4단계로 구분되었다(그림 2-2). 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가능여부를 판정하고 입주배치 및 입주 후 사례지원을 실시하고 운영사업자는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면서 사회적응훈련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7년 주거지원 이 후 전세주택(보증금)과 연계하여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림 2-2]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6) 서울시 및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내부자료 참고함.

운영방식은 IL센터 또는 법인 위탁으로 운영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주택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방식은 자치구와 운영사업자 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즉,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해 운영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서울시장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등 광역자원을 개발하고,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와 운영사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5년에 개선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은 자립생활주택의 사업 수행방식에서 자치구가 포함됨에 따라 업무가 재분장되었다(표 2-2). 즉, 서울시는 전환서비스 사업 총괄 및 주택확보, 자치구는 운영사업자 관련 행정업무, 지원센터는 입주자 서비스 지원 및 운영의 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표 2-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계획(2015년 기준)

구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생활주택 보조금 지원 및 서비스 기준 마련으로 표준화된 양질 서비스 제공</li> <li>-거주시설, IL센터, 보건소 등 지역 내 자원연계 강화로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li> <li>-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외 거주시설 전체 장애인으로 전환서비스 지원대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운영사업자’간 운영협약 체결하여 자치구 통한 자립생활주택 지원</li> <li>-철저한 현장실사 및 심의를 실시하여 우수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위탁 결정</li> <li>-「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개선 대책」의 현장 적용 안정화 지속 추진</li> </ul>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li> <li>-개별 자립지원 위원회 운영</li> <li>-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전환서비스 질 관리</li> <li>-‘운영 실무 안내서’ 제작 및 배포</li> <li>〈보조금 지원기준 수정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표준 서비스 마련〉</li> <li>-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비 지원기준 수정</li> <li>-자립준비 단계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li> <li>〈거주시설 연계강화 및 IL센터 사업지원〉</li> <li>-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 희망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전환서비스 실시</li> <li>-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IL)센터의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운영사업자’간 자립생활주택 사업 수정 운영협약 체결</li> <li>-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위탁 관리</li> <li>-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개선대책 지속 추진</li> </ul>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지원 체계의 변화로 인해, 자립생활주택은 지원센터에서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그림 2-3). 지원센터는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연계지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표 2-3). 이 외 주요 사업은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등 광역자원 개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지원(자립희망자 입주결정 및 자립생활 서비스 설계 및 관리), 그리고 운영사업자 지원(운영사업 선정 및 재위탁 심의,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관리) 등이다.

기 존			개 선 (2015년 실시)		
구분	기간	재원주체	구분	기간	재원주체
자립생활 체험홈	2년	복지재단	자립생활주택	7년	서울시
자립생활가정	5년	복지재단	지원센터	자립희망 장애인의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연계지원 확대	복지재단
지원센터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운영관리	복지재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그림 2-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변경 내용(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표 2-3〉 서울시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의 주요 개선 사항

구분	세부항목	기존	개선
장애유형별 맞춤 전환 서비스 지원	주택분류	-자립생활 체험홈 (2년거주, 교육·훈련) -자립생활 가정 (5년 거주, 주거지원)	-자립생활주택 (총7년 거주 교육·훈련, 주거통합지원)
자립생활주택 사업수행 방식 변경	운영방식	-체험홈: IL센터·법인 위탁 -가정: 서울시복지재단 직영	-IL센터·법인 위탁
	예산지원	사→재단→운영사업자	사→자치구→운영사업자
	관리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기능강화	지원대상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입주자	기존+거주시설 탈시설 희망 장애인
	기능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관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 (2)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 현황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의 추진체계가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에 따라 자립생활 인프라와 지원체계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 기능이 기존 자립생활 가정을 직영 운영하는 역할에서 거주시설 연계·자원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로 강화되고 있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의 거주 지원 내용은 입주기간, 운영형태·운영방식의 변경, 예산지원방식 등이 변경되었다(표 2-4). 변경된 내용의 특징은 입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운영사업자 일원화)과 함께 자립준비 기간이 최대 7년(기존 체험홈 2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담인력은 2개 주택당 코디네이터 1명이 지원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지원에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은 자립준비 기간이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운영방식에서 전담인력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1명 전담인력이 2개 주택을 담당한다. 전담인력 역할은 개별자립생활 체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이다. 신체장애는 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장애인의 개별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등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는 기본적인 업무인 입주자의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안전관리, 인권, 특히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 등 전담인력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 예시로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5). 발달장애인 생활지원은 입주자 자립지원, 건강, 안전, 인권 등이고, 지역자원 연계는 봉사자, 서포터즈, 동료상담가 및 관련 센터(전문가 집단 포함) 등과 함께 연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코디네이터 업무는 생활지원을 위한 “개별화 지원계획”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까지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하나의 실례이며 개별 코디네이터 또는 운영사업자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

〈표 2-4〉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 추진체계 변경 사항

구분	자립생활 체험홈·가정(2014년)	자립생활주택(가형, 나형)(2015년)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자방시설 토소 후 서울 1년 이상 거주자 포함-	동일
입주절차	신청→입주상담→입주심의→배정	동일
입주인원	주택별 2~3명	동일
입주기간	최대 2년 / 5년 (최대 7년)	최대 7년
서비스 내용	개별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자립지원	동일
주거형태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등	동일
운영형태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자 위탁 운영 자립생활가정: 지원센터 직영	위탁운영 (기존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자)
위탁기간	기본 2년 계약	동일
운영방식	· 체험홈: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근무 · 가정: 6~7주택당 전담직원 1명 방문지원	· 1명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이 2개 주택 담당
운영비	[자립생활체험홈] · 운영비: 월평균 3,000천원 · 비품구입비: 5,000천원(1회) · 편의시설 설치비: 3,000천원(1회)	기존 체험홈 운영예산(전년대비 10% 상승)+주택별 80만원~110만원 지원
예산지원방식	서울시→지원센터→운영사업자	서울시→자치구→운영사업자
특징	· 체험홈에서 가정으로 주택이동(지역변경) 및 운영주체 변경으로 지원의 일괄성 낮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체험홈 2년 기간으로 자립준비 부족하여 기간 연장 필요 · 자치구 등 행정기관 참여 및 지원 불가 · 지원센터 기능 한정(자립생활가정 직영)	· 통합운영으로 입주자 지속 지원 가능 · 발달장애인 자립준비 기간 확보 · 예산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 사업 참여 및 행정지원 가능 · 전체 위탁운영에 따라 전환지원을 위한 거주시설 연계, 자원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지원 환경 조성

자료: 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2-5〉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업무

구분		내용	
생활 지원	입주자 자립 지원	입주 전(일) 체크리스트	· 거주시설 사례회의, 현장기록상담지 파악, 입주일 전입신고, 사회서비스 신청 등
		입주자 욕구파악	· 동료상담, 초기상담기록지, 입주자 개별상담 등
		입주자 자립지원회의	· 자립생활 플랜회의, 외부전문가 회의
		입주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 프로그램: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정보제공, 자원연계(정부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 평가: 평가회의, 입주자 회의, 계획점검·재실행 등
		일상생활	· 정서적지지, 주택관리, 금전관리, 문제행동·언어표출 등에 대한 대처
		사회생활 적응	· 서포터즈 연계, 취업훈련 및 연계
	건강	의료지원기관, 체육센터 연계	· 입주자 건강관리(주로 병원, 보건소 등) · 정신건강(우울증, 조울증, 부적절한 행동표출 등) · 시설과의 유대관계(애정결핍), 자기표현 부족 · 음식물 섭취 및 관리(편식, 인스턴트 음식, 음식량 조절 등)
	안전	소방서, 경찰서 등	· 소방안전체험 및 교육, 응급콜 서비스
	인권	인권단체, 변호사 등	· 소유물 인식, 사진촬영, 타인과의 다툼 등
	지역자원 연계	봉사자	· 입주자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안전규칙, 주택 관리
서포터즈		· 금전지원 및 관리, 정서적 지지	
관련 센터(전문가 집단 포함)		· 입주자 자립계획, 문제행동 대처방법 모색, 정보제공 등	
동료상담가		· 욕구파악, 정서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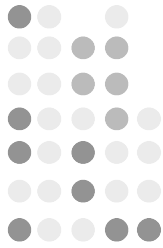
주) 현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함.  
본 내용은 전담인력 모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 하나의 예시로 기술하는 것임.

이상의 내용에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주거(자립생활주택)를 초점으로 전담인력, 사업비, 그리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주거(housing) 초점이 아니라 지원(support)을 초점으로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서비스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주택에서 7년

동안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확대된 반면, 자립생활주택 운영방식과 지원내용은 전담인력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생활주택 운영방식은 2개 주택당 1명의 전담 인력이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사업자마다 지원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의 수와 장애정도가 상이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강도가 다르다.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받는 내용은 기본 서비스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주거 초점과 지원 초점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③ 국내 사례 및 시사점

본 장은 “거주유형”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개별 사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 또는 자기결정을 위해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정과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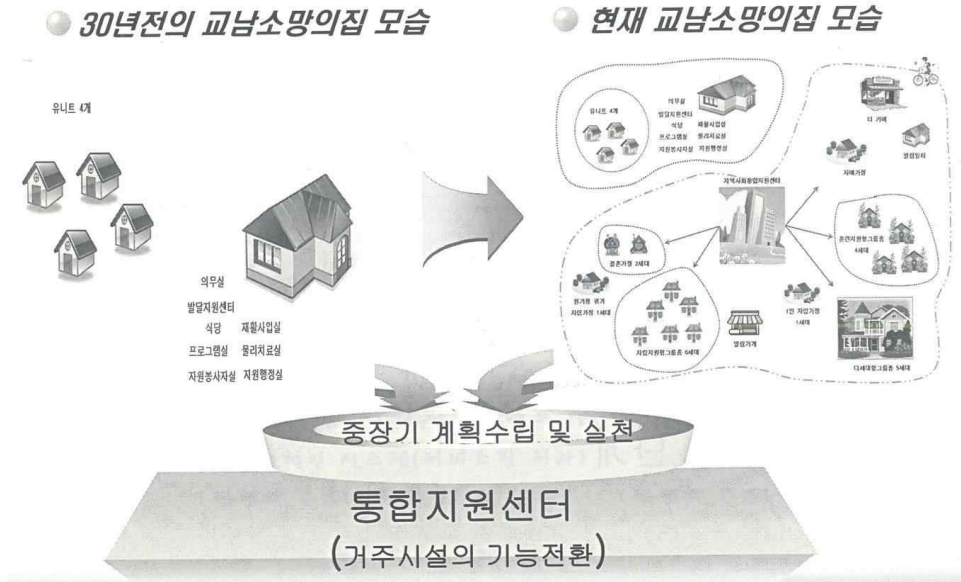
#### 1. 교남소망의집(거주시설)<sup>7)</sup>

##### 1) 개요

교남소망의집은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등이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이다. 교남소망의집은 장애인이 시설생활에서 지역사회생활로의 이주를 위해 오랜 시간동안 중장기계획을 통해 준비하고 수정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 이전전략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제는 ① 거주형태의 다양화<sup>8)</sup>, ② 거주형태에 따른 서비스 체계 변환, ③ 기관의 내부정책 마련 및 직원 양성 프로그램 등이다. 지역사회 생활 장애인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그림 3-1), 센터의 역할은 ①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③ 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행, ④ 통합사례관리, ⑤ 원가정 지원, ⑥ 중증장애인 단기보호, ⑦ 최중증장애인 거주서비스 등이다. 이와 함께 거주시설의 기능전환을 위해 교남소망의 집 인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7) 이형남(2014), 황규인(2011), 황길재(2014) 자료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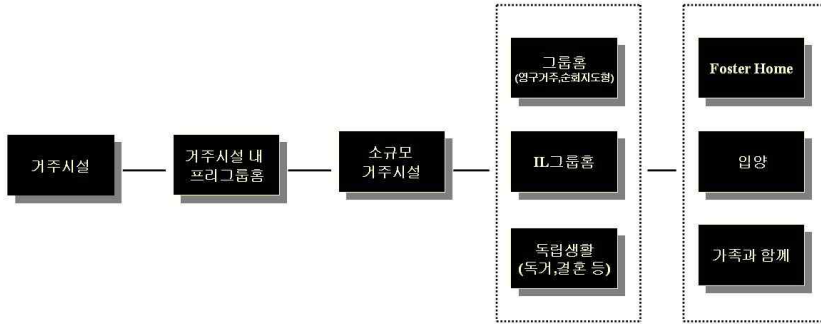
8) 교남소망의집의 거주형태를 보면, 지원내용별, 가족유형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지원내용별 구분은 훈련지원형 그룹홈(3세대), 자립지원형 그룹홈(6세대), 체험홈(6세대)이 있고 가족유형별 구분은 1인 자립가정(1세대), 결혼가정(3세대), 자매가정(1세대) 등임.



[그림 3-1] 교남소망의집 통합지원센터 운영 체계도(안)(자료: 황길자, 2014)

## 2) 운영 방식

교남소망의집은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다양한 거주지원서비스, 거주형태에 따른 서비스 체계 변환,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거주지원서비스는 물리적 거주형태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자체 홈, 소규모 거주시설인 그룹홈, 체험홈(자립생활그룹홈), 자립홈(독립생활로서 독거 및 결혼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거주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즉, 획일적인 거주지원이 아닌 다양한 거주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3-2).



[그림 3-2]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유형(housing options)(자료: 황규인, 2011: 5)

거주형태에 따른 서비스 체계 변환은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이용자 선택 방식 서비스 개발, 인권기반 서비스 실행, 지역사회통합지원 방안 마련 등의 실행과제를 두고 있다(황규인, 2011: 8-9). 첫째,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은 생활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살려 기관의 역할에 부합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위해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 선택을 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인간의 권리임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서비스 과정에서 시설과 이용자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서비스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셋째, 인권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시설 형태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 조사와 교육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빠른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작동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로 이주 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역사회와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원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영양 및 건강,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 지역주민과 갈등 해결 등)들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통합지원은 지역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남소망의집 실천 과제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는 장기간 지역사회와 분리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시설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황규인, 2011: 10). 네트워크 단계는 전체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단계별 네트워크 현황

단계	주요과제	세부 활동	네트워크 기관
1단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준비 및 형성단계	지역사회 이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구조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실무협의 -장애인 욕구 문제 파악 개별서비스계획 수립 -자원목록작성 -시설신고 -장애인지역사회생활 통합지원에 대한 홍보	-교남 통합서비스위원회 -교남 사례관리 팀 -교남 지역사회재활부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관할 통·반상회
2단계 진행단계	공유의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장애인과 지역사회 관계자들 간 상호 연결 -협약체결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영역에 기반을 두고 개인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활동시작(가사, 문화 여가, 지역사회시설이용, 의료·교육서비스, 학습)	-응급구호기관 -직업 관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주민반상회
3단계 유지단계	의사소통을 최대화하고 계획실행과 관계유지 확대	-특정문제해결이나 프로젝트 공동수행 -동질적인 조직을 점차 확대 -네트워크 참여 기관과 구성원 간 갈등 해결 -장애인과 직접 연계된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구성원들에 대한 조정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모임	-응급구호기관 -종교기관 -직업 관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의료기관 -주민반상회
4단계 점검 및 평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점검	-활동자료 수집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한 성과요소를 확인하고 공유 -네트워크 질적 수준 향상과 적합성검토	-응급구호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주민반상회 -직업 관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자료: 황규인(2011), pp.17-20.

네트워크 참여기관 유형은 공공행정, 종교기관, 지역자원 봉사단, 의료기관, 직업재활, 복지관련 민간기관, 자원봉사센터, 기타 등이다. 각 유형별 기능과 역할은 <표 3-2>와 같다.

<표 3-2>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

구분	기능 및 역할	네트워크 참여 기관
공공행정	주택임대 및 관리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법률행정지원	강서구 사회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응급 시 대응	182신고센터, 강서소방서, 119구급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재난구조네트워크, 대한적십자 강서지회
종교기관	종교 활동 지원, 정서적 교류, 인적물적 자원제공	람원교회, 경북교회, 강남교회, 백석대학교회
지역자원 봉사단	인식개선 및 중개지역할	역마을봉사단, 귀뚜라미복지재단, 나누리 봉사단, 세잎클로버, 강서구청 마라톤 동우회, 무궁화 배드민턴 클럽, 서울메트로, 우리들 산악회, 행만사, 따뜻한 동행, 열세달 사랑나눔, 신영교회
의료기관	정기점검 및 장애로 인한 특수진료	메디힐 병원, 건강관리협회, 오승환 정신과, 세란 내과, 손안과, 해성한의원, 하나과 의원, 구이비인후과, 열린연세 정형외과, 온누리 약국, 강서구 약사회
직업재활	직업 탐색, 알선, 취업활동,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열림일터, 늘푸른나무 복지관, 행복을 파는 장사꾼, 화곡역, 라셈 코스메틱, 롯데리아, 현대종합포장
복지관련 민간기관	정보제공, 프로그램이용, 자조모임, 자문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 강서자활후견기관, 정보문화진흥원,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문화 및 여가지원, 특기적성활동지원	강서자원봉사센터, 양천자원봉사센터, 88체육관, 주영볼링장, 제일헬스장
기타	편의시설 및 학습	삼보할인마트, 무궁화문구, 홍콩반점, 성화꽃방, 씨시미용실, 방주주방, 구문 학습, 재능학습, 현대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동부화재

자료: 황규인(2011), p.21.

이상에서 서술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이행 전략수립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문제, 운영상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시설거주 장애인의 거주 공간은 시설내로만 명시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 ②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은 법적 문제, ③ 거주공간의 분산으로 인한 인력부족, ④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넘비현상 등이다(이형남, 2014: 16).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남소망의집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 2. 광주 엠마우스집(거주시설)

### 1) 개요<sup>9)</sup>

엠마우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위해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소비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하고 장애인 당사자주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박형진, 2010). 엠마우스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산하 시설(그림 3-3)을 지칭하는 것이고 엠마우스집은 그 중 하나의 기관이다.

엠마우스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1981년 국내 최초 그룹홈을 운영하였다. 초기 그룹홈은 지적장애인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 후 그룹홈은 지역의 일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에 위치하였고 장애인들의 연령, 자립도, 거주목표에 따라 교육형, 영구형(거주형), 탈시설화형, 청소년형, 자취형 등 5가지 단계로 전문화시켰다(가톨릭신문사, 2003.1.26). 최근 엠마우스 그룹홈은 교육중심 그룹홈, 거주중심 그룹홈(영구형), 청소년 그룹홈, 탈시설화 그룹홈 등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홈페이

9) 엠마우스복지관(엠마우스집) 홈페이지, 오혜경 외(2012), 엠마우스집 내부자료 요약



지 자료). 다른 지역과 달리 엠마우스 그룹홈은 10~50대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고 거주인의 직업은 중·고교 학생부터 공단 근로인까지 다양하다(한겨레, 2011.12.7). 엠마우스는 그룹홈이 정착되면서 지적장애인들의 사적 영역을 보장받으면서 지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한겨레, 2011.12.7).



[그림 3-3] '무지개공동회' 산하 시설 현황(자료: 엠마우스복지관 홈페이지)

이런 활동 속에서 엠마우스집은 2010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주택 10채<sup>10)</sup>를 마련하여 그룹홈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그림 3-4). 엠마우스집은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주시설로 성인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엠마우스집은

10) 1채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9채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됨.

30~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재활교사 1명과 지적장애인 4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개 아파트는 법인에서 기증하였고 나머지 9개 아파트는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였다. 또한 아파트 현관에 간판이나 시설을 나타내는 구조물이 없어 거주시설이라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림 3-4] 엠마우스집 위치도(자료: 엠마우스복지관(엠마우스집) 홈페이지)

엠마우스집은 장애인 당사자를 복지대상자로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애인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즉,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퇴근하여 지역사회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동아리활동 또는 취미생활 등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 2) 운영 방식<sup>11)</sup>

엠마우스집 입소자는 낮 시간에 작업장 등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성인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공동주택(이하 ‘유닛(unit)’<sup>12)</sup>이라고 명명함)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유닛의 공간구성은 1인 1실(주로 작은 방) 또는 2인 1실(큰방 : 중앙에 옷장설치로 상호 개인공간 존중)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를 공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3-5). 개별 유닛에는 생활재활교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1개 유닛당 생활재활교사 2명이 교대근무(1인 월 17~18일 상주근무, 13일 휴무)를 하고 있다(김용득 외 4인, 2013: 156; 오혜경 외, 2012: 112).



[그림 3-5] 개별 유닛 평면도(예시) (자료: 부동산114-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99(운암동), 148.76㎡)

11) 김용득 외 4인(2013) 자료와 엠마우스집 현장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함.

12) 엠마우스집은 거주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룹홈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룹홈 용어와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10채 공동주택에서 한 채 주택이라는 의미로 유닛(unit)이라 표현하고자 함.

엠마우스집 개별 유닛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은 ① 주택 꾸미기, ② 지역주민과 만나는 과정, 그리고 ③ 일상생활지원 체계 등이다. 주택을 구입하여 이웃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공동생활에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주택 꾸미기에서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으로 주택내부를 꾸밀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 사적 공간은 오로지 발달장애인 자신만의 공간이 된다. 주택을 꾸밀 때 가구의 배치뿐만 아니라 벽지 고르기, 그리고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까지 모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계획하고 결정한다.

다음으로 지역주민과 만나는 과정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이웃 주민간의 관계망이 형성되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아파트 경비아저씨와의 관계와 아파트 입주자간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생활재활교사,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지원의 방식이다. 개별 유닛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과 달리 의무실과 조리실이 없다. 즉, 거주시설 인력은 원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로 구성<sup>13)</sup>되어 있고, 의사(또는 촉탁의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영양사 등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건강관리는 개별 유닛 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시설에 채용되는 의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를 대신해서 지역사회 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가구단위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대신하여 개별 유닛에서 주말과 아침은 생활재활교사와 거주인이 인근 마트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주말에는 외식도 자주 한다. 인근 마트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식재료비는 월 단위로 거주시설 사무실에

13) 2015년 2월 기준, 엠마우스집 직원(현원)은 20명이고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이 있고 팀장(사회재활교사 포함) 2명과 생활재활교사 15명으로 구성됨. 여기서 원장, 사무국장, 회계, 팀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생활재활교사 15명은 개별 유닛에서 근무함.

서 정산한다. 다른 거주시설은 시설 내에서 머리손질과 목욕 등을 하고 있는 반면, 엠하우스집은 동네 마용실과 목욕탕 등 주변 편익시설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유닛에 따라 개인의 활동이 다르고 그 활동에 알맞은 개인별 지출 비용의 규모도 다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엠하우스집은 개별 유닛으로 거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주시설과 달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가정방문, 경제·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작업장 및 직장 담당자, 자원봉사자, 가족 결연, 후원자, 아파트 주민 등)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 생활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3. 대구 안심마을<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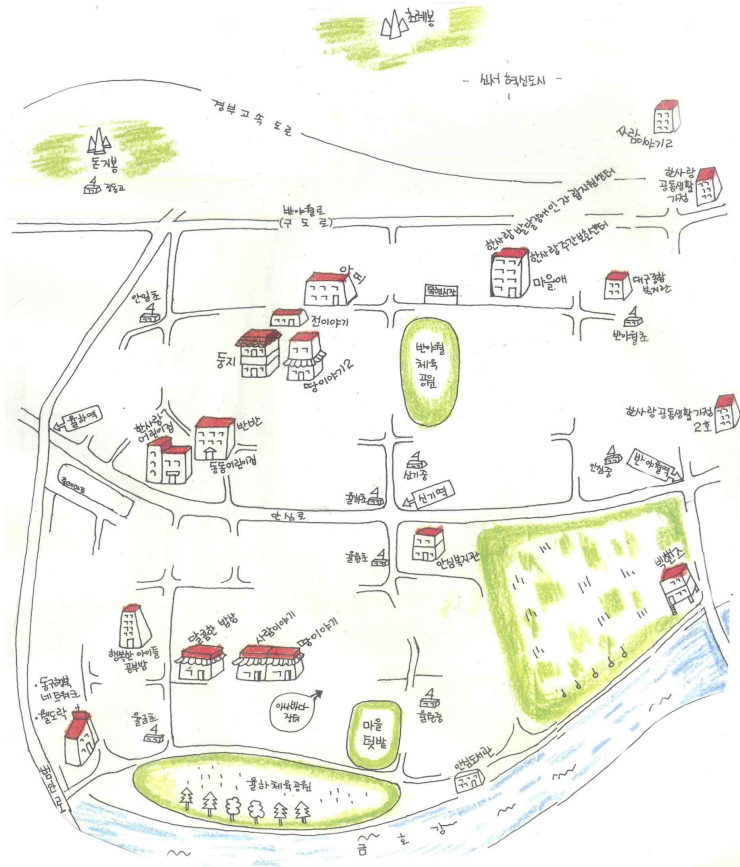
#### 1)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안심마을’은 행정구역상 명칭이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가 안심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이형배, 2015). 안심마을은 작은 주민단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그림 3-6).

안심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안심협동조합 땅이야기, 협동조합 달콤한 밥상, 협동조합 등지,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어린이집,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 율하 아나바다 위원회, 협동조합 공터, 마을학교 행복한 아이들 등이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103). 다양한 활동 중에서 2008년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든 ‘아띠’ 도서관(그림 3-7)<sup>15)</sup>

14) 대구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현장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 관련 자료 등을 요약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함.

은 안심마을 공동체의 도화선이 되었고 ‘아띠’ 도서관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안심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만들면서 안심마을 공동체 활동은 확대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104).



[그림 3-6] 대구 안심마을 지도(자료: 안심마을공동체 창간호)

- 15) 아띠는 ‘친한 친구’ 라는 이름 그대로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반야월 지역 엄마, 아빠들이 모은 자금과 재능기부로 만들었음. 내부를 꾸미는 일이나 홍보활동 등도 직접 하는 작은 마을도서관임. 이 도서관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후원자이기도 한 주민참여도서관임. 현재 회원은 400여 가구이며 후원금은 월 100~110만원, 운영은 30여 명의 순수자원봉사로 이루어짐(뉴스민, 2015.1.21 인용).



[그림 3-7] 안심마을 어린이도서관 '아띠' (자료: 안심마을공동체 창간호, 27)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이하 '한사랑'으로 명명함)은 장애인의 거주, 고용, 여가활동 등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생활문제 전반을 고민하던 시점에 마을공동체 운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안심마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김병하, 2014: 28). 한사랑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먼저 한사랑어린이집을 개관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윤문주, 2014: 10-14).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아띠' 도서관 개관이었고 이 시기부터 한사랑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08년 '아띠'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이 사서보조로 일을 도왔고, 이 후 2010년 살기 좋은 안심 만들기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의 미션으로 「동구행복 네트워크」, 2012년 마을사람들과 발달장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카페 「사람이야기」, 2013년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 마을학교인 「둥지」에 발달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김병하, 2014: 29).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공동가정 공간인 「동해빌」과 「미르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사랑은 안심마을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거, 고용, 여가활동 등을 형성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 2) 운영 방식

한사랑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영역(교육, 고용, 주거, 여가활동 등)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안심마을은 공동의 목적과 이해를 위해 대안적 경제방식인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체계는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결성하고 재정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교육, 고용, 주거, 먹거리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간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하고 공동체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 발달장애인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참여 및 활동 방식과 소통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체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장애가 차별이 아닌 차이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인 ‘등지’가 있다(김병하, 2014). 교육협동조합인 등지는 방과후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등지는 학습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등지의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회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회의과정과 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역 주민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소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경제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카페 ‘사람이야기’, 도시락과 밑반찬을 공급하는 ‘웰도락’과 ‘달콤한 밥상’이 있고,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인 ‘동구행복네트워크’는 LH에서 위탁받은 마을텃밭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되어 있다. 그리고 ‘아띠’ 도서관에서 사서보조로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형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과 달리 지역주민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장소)이 있고 이 공간을 통해 지역주민이 발달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점차 익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3-8] 안심마을 주택협동조합 ‘공터’

한사랑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공적 소유에 대한 마을의 실험으로 주택협동조합인 ‘공터’를 건립하였다(그림 3-8). 이 건물은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언어·심리치료를 담당하는 협동조합 ‘마을애’<sup>16)</sup>, 주

16) 장애아동 부모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장보기와 대중교통이용 등 생활밀착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간보호시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청년들의 취업지원 및 자립을 돕는 ‘한사랑발달장애일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공터’는 개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50명의 조합원에 의해 2억의 출자금으로 건설되었다.

한사랑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안심마을에서 함께 일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사랑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자립해서 생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김정화, 2014: 58-60). 첫째, 한사랑은 지역사회통합이라는 것을 목표로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이 마을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관계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취업 문제를 보호작업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또는 직장 등 물리적 공간을 공유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생계해결을 수단으로서 직업을 개념화하기 보다는 직업이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유의미한 노동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발달장애인이 익숙한 공간에서 돈은 되지 않지만 오전에 도서관에 출근해서 책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나뭇잎에서 농작물을 관리하거나 쓰레기 청소 등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발달장애인과 지역 주민간 신뢰 및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이 마을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갑자기 돌발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부적절한 행동<sup>17)</sup>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중재는 전문가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17) 직장생활에서 일 하기 싫다고 고집을 피우거나 계속 지각하는 행동,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타인의 팔을 꼬집는 등의 행동을 의미함(김병하, 2014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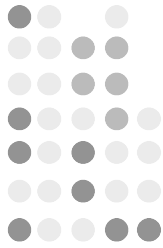
#### 4. 시사점

국내 사례에서 살펴본 거주시설(교남소망의집, 엠마우스집)과 지역사회 내 대구 안심마을의 공통적인 내용은 지역사회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자기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과 발달장애인 간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활동과 사람들간 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과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와 동일하다.

제시된 사례는 지역의 특성과 환경이 반영된 결과물이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환경조성 방법과 필요한 과정과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이다. 개별 사례들의 특징을 보면, 교남소망의집은 ① 거주유형의 다양화로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고, ② 거주형태에 따른 서비스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체계에서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선택 방식 서비스 개발은 단순히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엠마우스집은 ① 주거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여 자기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② 지역사회 내 직업활동 또는 지역자원(이·미용실, 병원, 식당 등)의 이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 안심마을은 발달장애인 거주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의 공동의 목적과 이해를 위해 대안적 경제방식인 사회적 경제 체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약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환경은 자기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과정과 체계는 사례관리 시스템과 함께 지역자원 또는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참여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논의될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체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4장 | 조사결과





## 4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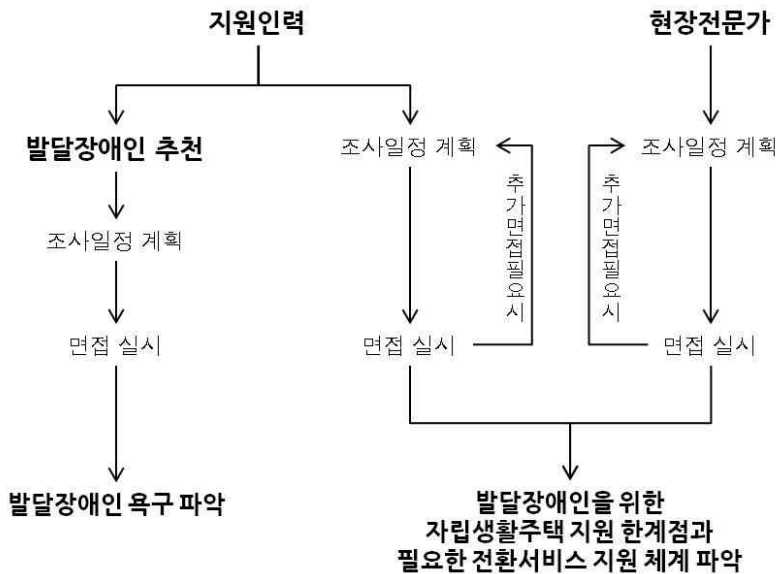
### 1. 조사 개요

면접조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의 한계점과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면접조사는 면접원이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과 현장전문가(자립생활주택 및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지원 인력, 관련 현장전문가)이다. 현장 전문가 대상 조사내용은 시설입소 단계부터 지역사회 생활까지 발달장애인의 사정하고 점검하는 단계, 관련 기관, 그리고 서비스 전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등이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입소단계부터 지역사회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경험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 참가자 선정과정은 ① 발달장애인 및 지원인력, ② 관련 현장전문가 선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인력의 참가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주택 담당자를 대상으로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중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고 참가하겠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을 추천받았다. 두 번째로 추천받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자의 인터뷰 참여 유무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과 지원 인력이 모두 인터뷰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참가자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처음 인터뷰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인터뷰 수행이 어렵거나 거부한 경우는 다른 참가자를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현장전문가 선정과정이다. 이들은 거주시설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은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시설단계부터 지역사회로 전환과정까지 개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면접조사 시기는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는 19명이고 참여자에 따라 1회~2회씩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인터뷰어가 진행했으며 1회당 면접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90여분이 소요되었다. 면접진행 방식은 먼저 코디네이터, 생활지도교사 및 관련 현장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여 사업 운영과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현황을 알아본 이 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후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생활지도교사 및 관련 현장전문가에게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그림 4-1). 최종 면접대상자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지원인력 4명과 발달장애인 5명,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에서 사업 담당자(또는 담당 인력) 6명과 발달장애인 4명이다(표 4-1).



[그림 4-1] 자료수집 절차



〈표 4-1〉 면접대상자 현황

구분		성별	연령	소속 <sup>주)</sup>	구분	성별	연령	소속 <sup>주)</sup>	
사업담당 및 지원인력	참가자1	여	64	주택	발달장애인	참가자11	남	35	주택
	참가자2	여	39	주택		참가자12	남	30	주택
	참가자3	남	35	주택		참가자13	남	47	주택
	참가자4	남	46	주택		참가자14	여	36	주택
	참가자5	여	45	시설		참가자15	남	34	주택
	참가자6	여	46	시설		참가자16	남	34	시설
	참가자7	남	40	시설		참가자17	여	36	시설
	참가자8	여	49	시설		참가자18	여	26	시설
	참가자9	여	36	시설		참가자19	여	35	시설
	참가자10	여	48	시설					

주) 주택은 '자립생활주택'이고 시설은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을 의미함.

## 2.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목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의 한계점과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 생활지도교사 및 관련 현장전문가에게 현행 지원 절차,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등을 조사하였다.

### 1)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 절차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체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표 4-2). 거주시설 입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절차는 거주시설 입소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파악을 통해 자립생활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후 지원위원회에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확정되면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의 한계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욕구파악은 거주시설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의 일상생활 관찰결과와 습관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 파악은 몇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욕구와 현실적인 욕구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지원위원회의 운영과 자립생활주택 입주 및 지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으로써 처음 대면하거나 혹은 익숙한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의 결과를 통해 수립되는 지원계획에는 많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 4-2〉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현황 및 한계

구분	관련 주체	현황	한계
욕구파악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서울시 및 재단)	-거주시설 입소자, 거주시설 내 그룹홈 또는 체험홈 입소자를 대상으로 거주시설 담당자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파악	-거주시설이라는 익숙한 환경의 일상생활만 파악 가능
신청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서울시 및 재단 (동료상담가 포함)	-자립의지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퇴소를 위해 -재단 직원이 거주시설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동료상담가가 발달장애인 당사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 자립생활 욕구 파악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파악
지원위원회	발달장애인, 서울시 및 재단	-서류와 발달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주택 입주여부 파악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의지를 중심으로 입주 여부 결정
입주 및 지원	발달장애인, 코디네이터 (서울시 및 재단)	-자립생활주택 입주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코디네이터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발달장애인과 지원인력간 의사결정체계 미 구축

주: ( ) 는 간접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함.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익숙한 거주시설이라는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파악이 필요하며, 거주시설에서 알고 지내던 생활지도교사나 동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과 발달장애인간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행 지원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전환체계

#### 기관과 서비스제공자간 정보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절차를 보면, 거주시설 담당인력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울시 및 재단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입주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거주시설 지원인력과 서비스 제공자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기관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제공자간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실패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교류되어야 한다.

#### 사정(assessment) 과정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습관은 거주시설이라는 익숙한 공간 또는 일정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반면, 지역사회는 거주시설과 달리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범위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정 단계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정 단계는 지역사회 전환 또는 정착을 위해 거주시설부터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은 그들의 개별적 특성과 함께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동료들과 단체 생활을 하다가 서서히 독립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욕구에 대한 사정과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의사결정체계

### 지역사회 전환하기 전 지역사회 연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단계는 거주시설의 담당 인력과 서울시 및 재단(동료상담가 포함) 인력이 거주시설로 찾아가 발달장애인을 인터뷰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로의 자립에 대한 경험보다는 대부분 의사소통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듣고 준비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과 변화되는 환경은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는 발달장애인에게 또 다른 역할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과정이다.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역할은 공동으로 생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역할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지만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역할은 자기표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좀 더 실천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결정 또는 의사소통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준비단계는 자립생활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전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정보제공 또한 필요하다.

### 참여 경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참여는 욕구조사단계와 신청, 그리고 지원위원회에서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수준이다. 발달장애인의 참여경로가 거주시설이나 동료상담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또는 “자립을 원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지역사회로의 자립여부가 결정된다. 즉,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주로 거주시설 담당 인력, 동료상담가, 그리고 지원위원회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참여경로를 확장시켜 미흡하더라도 지역사회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부터 그들의 선택과 결정 경험 단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새로운 지역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원인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개입을 위한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발달장애인 전환과정에서 어떤 전환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파악하였다(표 4.3). 즉,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환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 전환서비스는 입주자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화지연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또는 교육기회 제공, 지역사회 자원간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방법의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애인 전환서비스는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주장함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4-3〉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구분		지원방안
전환 서비스 지원	입주자 욕구 파악	-행동관찰, 현장기록, 의료사항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체계 필요 -초기 사정을 통해 임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서비스를 마련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해 재사정 체계 필요
	지속적 체험과 교육 지원	-초기 체험과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므로 정보와 지식제공에 대한 다양한 방법 필요
발달 장애인	본능과 관련된 자기조절	-거주시설과의 애착, 애정결핍 및 우울증 등에 대해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신뢰 및 애착관계 형성 필요 -법률/성/금융/정신치료 등 전문화된 지원인력 양성 필요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역량강화	-생활습관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필요 -경험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갖게 하고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권한을 주면서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체계 필요
지역 사회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1:1 멘토링, 자조모임, 동료상담 등을 통해 사회성 향상 -신뢰형성과 소속감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지 체계 필요
	응급안전을 포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화재, 가스, 창문출입문 등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 체계 구축(소방서, 응급센터, 콜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봉사자, 후원자 등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및 자원 연계

### (1)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원

#### 입주자 욕구 파악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의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코디네이터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자기표현과 선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동관찰, 현장기록, 의료사항 등 다양한 자료 등의 정보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은 초기 사정을 통해 개별화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계획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현장에 따라 입주자의 욕구 파악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 전환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사정을 실시하여 임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느 시점에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재사정 체계가 필요가 있다. 즉, 입주자 욕구 파악을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1단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기존 수집된 정보(예. 거주시설로부터 받은 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 일상생활 관찰,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활동결과 등을 정리하여 단계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 강점 및 약점,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지원계획이 작성되는 단계이다.

다음 2단계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개별화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1단계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때 구체적인 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전환과정 속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질문을 통해 만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환서비스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지속적 체험과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습득해야 하는 기능과 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체계에서는 1-2번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하나의 기능과 일상생활을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기보다는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이라도 다양한 방법과 절차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왜 이 체험과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된 체험과 교육이 실시되다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이 습득해야 할 기능과 교육의 동기부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2)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 자기조절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면서 환경의 변화는 발달장애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자립생활주택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시설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거나 그 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초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신경질적인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 발달장애인의 기쁨, 슬픔, 분노, 흥분, 좌절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이는 초기 단계에 집중적인 신뢰 및 애착관계 형성으로 지원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을 위한 관계형성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자기감정 표현과 새로운 호기심(법률, 금융, 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인력도 필요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새로운 활동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역량강화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기회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기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하고 생활 습관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해야 하고 외출을 하기 위해 무엇을 입을지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할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때 담당인력의 생각이나 주변사람들의 생각이나 선택이 아닌 발달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지역사회 자원

####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고립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 역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 내용으로는 일대일 멘토링, 자조모임 및 동료모임 등이 있다. 일대일 멘토링, 자조모임 및 동료모임은 실천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참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과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람들간 신뢰와 관계형성에 대한 방법을 습득하고 나면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 지지체계도 구축될 수 있다.

#### 응급안전을 포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달장애인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공적 영역의 서비스 및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 운영자별로 다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고 광역차원의 자원도 연계되고 있다. 하지만 봉사자 또는 후원자는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을 동등한 관계로 바라보기 보다는 지원하고 돌봐야 하는 관계로 생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지역주민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중간지원조직(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 자원간 연계하는 중간자 또는 중재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3. 발달장애인 면접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대상 면접조사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을 통해 그들의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이 어느 정도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원 인력의 운영을 함께 검토하였다(표 4-4). 이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할수록 자기결정권과 통제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은 지역사회 환경이라는 조건이 유사한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표 4-4〉 발달장애인 및 지원인력 대상 면접조사 결과

구분		거주시설(자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가형, 나형)
생활 패턴	주중 (취업자)	아침	-출근준비 및 식사
		낮	-근무, 직장동료와 점심식사
		저녁	-퇴근 후 식사, 운동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주중(비취업자)	-시설 자체에서 운영하는 근무지 또는 기관에서 활동	-집에 있거나 해당 비영리단체 및 시설기관에서 시간을 보냄
주말	-체험홈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여행, 영화 등 단체로 다양한 활동 전개	-등산·운동·종교활동 등 개별적 활동 -코디네이터가 연결해 준 프로그램 참가	
운영 현황	지원인력	-4~8명 담당(대체인력 있음)	-3~6명 담당(대체인력 없음)
	근무시간	-17~익일 9시 또는 14(혹은 15시)~22시	-9~18시 (주로 평일 일과 시간)
	그 외	-대체인력은 있지만 역시 부족 -대체인력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경우, 거주자의 생활패턴에 대한 세밀한 부분 이해도 저하	-대체 인력 거의 없음 -관리자의 건강 및 개인문제로 공백이 생기면 거주자 생활 영향

### 의사소통체계 구축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거주 발달장애인간 생활패턴을 보면, 상대적으로 자립생활주택 발달장애인이 자기선택의 기회가 많았다. 체험홈은 생활지도교사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자립생활주택은 주중 낮 시간동안만 코디네이터가 지원하고 주중 저녁,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 지원되는 시간 이외에는 미리 일정을 계획하거나 전화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선택의 기회가 많다고 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 발달장애인이 자기표현과 자기결정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유는 체험홈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성과 타인과의 관계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환경적 조건보다는 지원인력이 그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다.

### 발달장애인과 지원 인력 관계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모두 지원인력이 있다. 체험홈은 기존 그룹홈과 비슷하게 대체인력이 지원되지만 현재 자립생활주택은 대체인력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주택의 코디네이터가 퇴사하거나 불가피하게 잠시 휴직을 할 경우, 다른 코디네이터와 발달장애인간 소통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무성을 지닌 전문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4. 소결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표 4-5),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지원 방향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와 자립생활주택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등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한다. 먼저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시기로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구축은 전환체계와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거주시설에 입소한 시점부터 전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는 시기으로써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원,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조절,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주거지원을 근거로 한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계획수립, 지원서비스, 지역자원 간 연계 등 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천 과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내용과 실천 과제

구분	내용		과제
지역 사회 이전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구축	전환체계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간 정보채널 다양화 -사정 과정 강화
		의사결정체계	-지역사회 전환 전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참여 경로 구축
지역 사회	자립생활주택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원	-입주자 욕구 파악 체계 개선 -지속적 체험과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자기조절 체험 강화 -자기표현·자기결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사회 자원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응급안전을 포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의사소통체계 구축 -발달장애인과 지원인력 관계개선 프로그램 강화

## 1)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체계 개발

### (1) 전환 절차 체계화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환 계획은 발달장애인이 퇴소 이후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 및 지원 인력, 그리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 수립은 지역사회에서 생활이라는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목표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거주시설 지원인력의 인터뷰 결과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통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과 환경변화에 따른 행동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반드시 발달장애인이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자기표현을 통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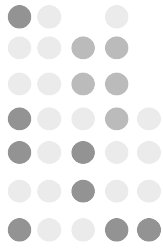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전환 계획 수립 대상은 우선적으로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된다. 전환 계획 수립 기간은 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거주시설 단계부터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는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 담당자가 주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강점 및 약점, 그리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역할을 부여하고 의사소통 결과가 관찰되고 축적된 정보를 통해 전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주시설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원 인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을 이

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환 프로그램 계획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그들의 욕구과약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자기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전환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소통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이다. 즉, 담당인력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타인과 발달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서 생각이나 뜻을 잘 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조절과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즉, 반복적인 경험과 기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반복적인 경험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선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연대 강화를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점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 제5장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정책과제





## 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인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시설되소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전환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개념과 그들을 위한 전환서비스지원 사업 목표를 파악하였고, 국내 사례, 면접조사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과 전환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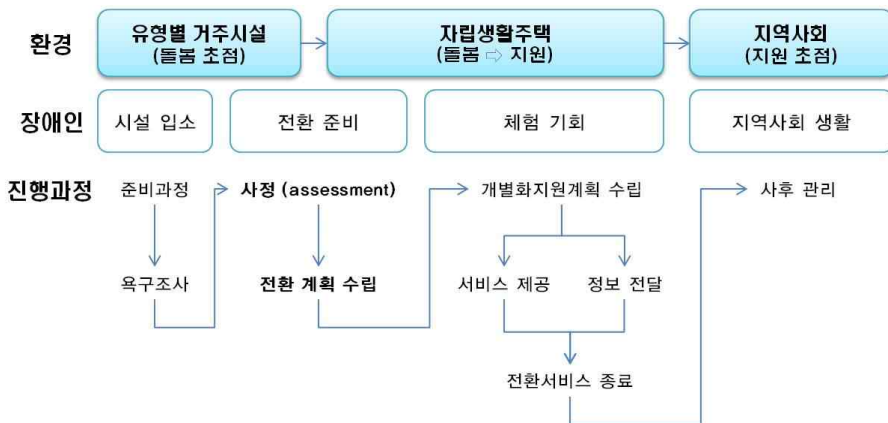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이유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내 개별적 주거전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체계에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는 면접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서 적용하는데 시간이 긴 발달장애인에게 단순 주택제공보다는 필요한 전환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안된 개선(안)은 단순히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능이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환서비스 개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자립생활 목표를 서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지원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목표는 전환 과정 속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서술하였다.

## 1.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안)

### 1) 사정(assessment) 기능 강화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림 5-1). 거주 장소 특성에 따라 거주시설은 돌봄 영역이 강조되고, 자립생활주택은 돌봄에서 지원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생활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전환 절차는 시설, 전환 준비<sup>18)</sup>,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1]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

각 절차별 전환서비스 체계를 보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조사해야 한다. 다음은 서울시 및 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개인 사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전환 계획(transition planning)을 수립해야 한다. 전환 계획이 수립된 이 후, 자치구와 운영사업자는 장애인 개별화지원계획을 수

18) 장애인 탈시설화 체계도에서는 탈시설 준비가 거주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준비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에서 모두 실시될 필요가 있음.

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환서비스가 종료되면 자치구, 운영사업자 또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을 통해 장애인 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후 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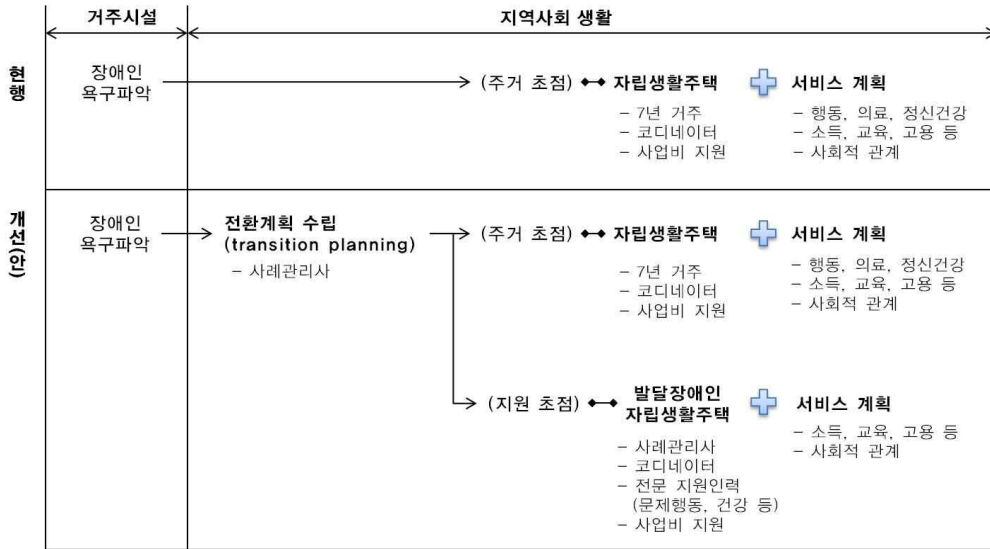
현행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와 비교해 보면, “전환준비” 단계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된 역할은 사정(assessment)으로서 장애인의 시설외 소 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정 단계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능력을 사정하여 지원할 서비스의 유용성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때 대상자의 장점, 잠재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관찰, 간접적인 경험 결과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 2)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향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장애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사에 의한 전환계획에 따라 주택 운영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그림 5-2). 현재 전환서비스지원에서 자립생활주택은 주거를 초점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즉,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외소 희망유무를 통해 주거가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이 후 개별화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가 지원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같이 전환서비스지원에서 지원(support)이 강조되면 이에 맞는 유형별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장애인 욕구조사와 더불어 전환계획 수립단계를 통해 기존처럼 ‘주거 초점’으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방안과 ‘지원 초점’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처럼 ‘주거 초점’인 자립생활주택은 7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담인력인 코디네이터 1명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개별화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반면 전환계획 수립을 통해 ‘지원 초점’인 자립생활주택은 사례관리사와

전문 지원인력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받고 운영기간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 되는 방식이다.



[그림 5-2]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절차(안)

따라서 전환계획 수립에서 장애인 욕구를 바탕으로 사례관리사에 의해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주거(housing)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거나 또는 지원(support)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즉, 자립생활 정도가 높은 장애인은 기존처럼 담당 코디네이터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자립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반면,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지원의 정도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 유형별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유형별 자립생활주택은 기존의 코디네이터 지원과 함께 개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사와 전문 지원인력을 통해 운영된다. 여기서 사례관리사와 전문 지원인력 운영은 지원의 정도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3)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따른 업무 조정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사정기능이 강화되고 자립생활주택 운영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하여 운영됨에 따라 현행 서울시, 지원센터, 운영사업자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운영 주체는 복지재단과 운영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센터는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역할이 있고, 운영사업자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체계로 개선이 된다면, 복지재단과 운영사업자 이외 공공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된 내용을 보면(그림 5-3),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센터는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정체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와 전문 지원인력의 채용·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사에 의해 사정된 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점검 및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역할 또한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사회로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과 제도 정비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선 전			→	개선 후		
구분	내용	운영주체	구분	내용	운영주체	
지원센터	-자립희망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	서울시 복지재단	지원센터	-시설외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사정체계 포함) 구축 -이행점검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사례관리사, 전문지원 인력 채용 및 양성	서울시 복지재단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자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자	
			서비스 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로 거주희망 장애인 전환 시스템 구축	서울시 자치구	

[그림 5-3]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역할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안)

### 1)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목표 및 사정 체계

#### (1)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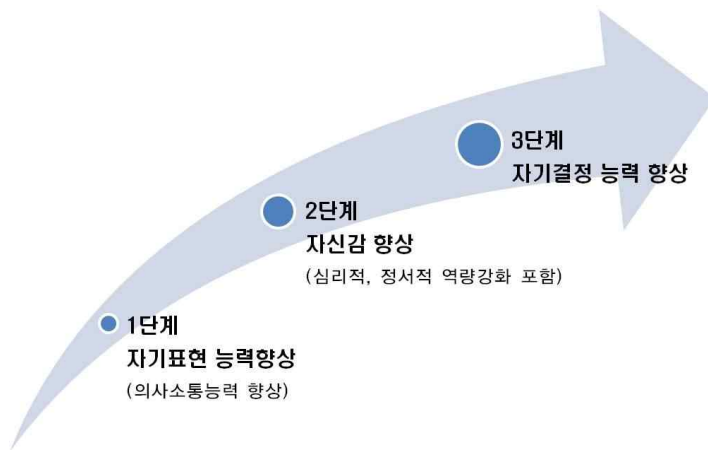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에서 전환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라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전환서비스는 “돌봄(care)이 아닌 지원(support)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전환과 전환서비스 개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제공된 환경과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환 기간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활전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결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기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목표 및 기본방향에 맞춰 재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을 통해 최종 목표인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그림 5-4).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활동’과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단계별 목표를 보면, 1단계는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기결정의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2단계는 생활전반의 변화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위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뿐

만 아니라 자기표현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전환기간 내에 발달장애인의 최종 목표는 자기결정 능력의 향상이다. 자기결정의 경험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4]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단계별 목표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정 체계: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

### (가)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자기주도 스케치에서 자기주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수행함을 의미하고 스케치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발달장애인이 자기표현이 미약하므로 전문가의 사정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발달장애인이 자기표현을 통해 스스로의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나) 목적

거주형태가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형태일수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통제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자기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충분히 자기표현을 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을 위해 소득 보장이나 주택, 맞춤형 서비스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선택이다.

따라서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는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내 실패의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즉, 발달장애인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개략적인 전환서비스 지원내용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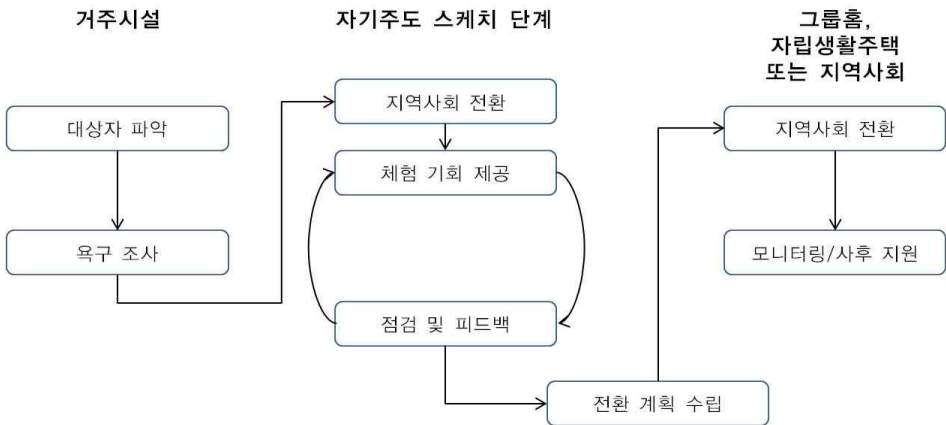
#### (다) 운영방법

이 스케치 단계는 발달장애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스케치는 대화, 그림, 행동, 기록자료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인 동시에 타인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케치 단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육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교육이나 전문가의 개입은 돌봄(care) 영역으로 활동지원을 통해 생활패턴(행동의 양식)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자는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과 자립생활주택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을 위한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이다. 사업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전환계획을 위한 회의 실시, 그리고 돌봄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등이다. 지원 비용은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구체적인 사업(의료비, 활동비, 생활비, 회의비 등)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5-5). 먼저,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 전에 거주시설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욕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 지역사회 전환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목표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전환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원인력 및 조건 등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환 계획 수립을 위해 발달장애인에게 자기표현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와 연대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이 활동 결과,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기록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지 혹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사후지원을 실시한다.



[그림 5-5] 자기주도 스케치 단계 절차

이 과정에서 진행해야 할 내용은 ① 사례관리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거주시설 관계자, 그리고 당사자 지원 인력 등 전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사전 교류와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②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수집으로서 관찰자료, 의료기록자료, 상담기록 자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 (1) 지원(support)을 기반으로 한 주택 제공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앞서 설명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정 결과인 사례관리사에 의해 전환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즉,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다음과 같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와 동일한 자립생활주택 운영방식이다. 전환계획 단계에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체험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1개 주택당 코디네이터 1명(예전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5개 주택당 코디네이터 1명(예전 자립생활 가정)이 지원한다. 이 때 코디네이터는 개별화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입주자 간 중재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계획자<sup>19)</sup>, 중개자<sup>20)</sup>, 조정자<sup>21)</sup>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방식이다. 전환계획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 현재 문제 상황, 신체·정신 등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능력, 심리·사회적 기능 등을 사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환

19)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례 계획, 서비스통합, 기관의 협력 및 서비스망 계획하는 역할

20)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역할

21)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

계획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욕구 및 문제를 사정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 공식적 자원을 구체화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의 지원인력은 직접 지원 인력인 코디네이터 1명, 사례관리사 1명,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코디네이터는 기존 계획자, 중개자, 조정자 역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기옹호를 위한 지원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코디네이터 인력 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의 강도와 내용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자기옹호 또는 인권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사례관리사는 코디네이터들에게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슈퍼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환계획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사정(assessment) 담당자이고 발달장애인 수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겠지만 권역별로 1명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전문 지원인력은 상담심리사, 건강관리사(노화, 다이어트, 식품영양, 간호 등) 등 다양한 영역의 인력으로 전문 인력풀을 이용하여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 자신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가) 필요성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도움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통합이 최종 목표이고 이 목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남소망의집은 다양한 거주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영양 및 건강,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 지역주민과 갈등 해결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광주 엠마우스집은 발달장애인, 생활재활교사,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회의를 통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넓혀 지역사회 내 생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 안심마을은 사회적 경제 체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 활동과 역할을 구체화시키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주로 한사랑)을 통해 지역주민과 신뢰 및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 가치에 두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시정 사업으로 강조하였다(서울특별시, 2012). 2012년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은 마을단위별 주민 및 풀뿌리 단체 등을 발굴·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육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제안 사업이다(서울시 공고, 2012.8). 사업의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장애인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장애인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 자립모델을 제시하였고 주요 사업은 마을텃밭가꾸기, 합창단·오케스트라 협연, 주민활동가 양성, 바리스타 배출, 장애아동 학교 적응 돕기 등 총 5개이다(서울시 보도자료, 2012.11.29). 특히 노원구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바리스타를 5명 배출하였다. 이 후 지역 내 주민들의 도움으로 직접 카페도 운영할 예정으로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지체·자폐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원구 ‘나누리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위대한 하모니’는 지역사회 문화단체와 연계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사례이다. 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대상으로 특화된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3년 이후 사례를 발굴하거나 지원된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나) 목적

발달장애인이 지역 주민과 연대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활동은 지역주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그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 (다) 운영방법

자기표현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달장애인이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사회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담당인력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부내용은 2012년 서울시가 공고한 장애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참고하되(부록1 참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는 일대일 멘토링, 자조모임, 동료모임 등을 통해 자기옹호와 자기표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전 단계이므로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게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기표현이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단계는 지역주민과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 3. 정책과제

#### 1) 운영 절차 및 전문 지원인력 양성관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장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제14조),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제15조), 그리고 주거지원(제16조와 제1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2 참고).

선행연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절차와 지원인력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탈시설 지원과 관련된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사례는 아니지만, 시설퇴소 지원과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시설거주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핸드북을 보면(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Centrepoint, 2002, 부록3 참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전체 점검내용부터 단계별 체크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퇴소를 위해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사정, 점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파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별 단계는 욕구파악 이전 단계, 시설퇴소 욕구 반영 단계, 시설퇴소 단계, 지역사회 내 자원, 참여단계, 정보제공,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시설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전체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시설퇴소 이후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제8조), 의사소통지원(제10조), 자조단체의 결성(11조)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부록4 참고).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자뿐만 아니라 상담사(임상프로그램 전문가), 언어치료사, 간호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인력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적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인력은 사례관리자와 상담사이다(보건복지부·덕성여대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 2014: 97-113).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학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간호학, 심리학, 가족학 등 휴먼서비스 관련학과 출신들도 필요한 교육을 이수 후 사례관리자로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발달장애인의 전반적 욕구를 평가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을 총괄하고 각종 정보에 대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사<sup>22)</sup>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 사례관리자로서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지역사회 상담기관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의무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에 따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 퇴소에서 지역사회 전환까지 당사자의 욕구사정과 점검 절차와 함께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운영 전반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전환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담당부서와 기관 및 지원인력 운영 등에 대한 역할정립과 예산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2) 전환단계 기능 강화

### (1) 사정(assessment) 체계 구축

초기 사정가(Screening and Assesment Specialist)를 배치하여 거주시설 입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테이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로 전환한

22) 상담사는 임상심리 전문가 또는 행동분석 전문가 등이 있을 수 있고 응급상황시 상담 인력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이는 지역사회 자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이 후 발달장애인에 대해 종합 인테이크를 실시한다. 현재 거주시설 입소 발달장애인의 자립욕구 및 특성은 거주시설 기관 종사자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거주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초기 사정가가 거주시설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테이크를 실시하여 사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초기 사정가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사례관리 사정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능력, 포괄적인 욕구 사정, 접근성이나 이용가능성에 상관없이 욕구에 적합한 모든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8: 226).

초기 사정 또는 운영사업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슈퍼비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 내 사회복지전공 교수, 사례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와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관한 ‘전문가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도록 한다.

## (2) 지역 중심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차원으로 운영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지도·감독 권한이 운영사업자 관할 자치구청장이 가지게 되면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이 지역 중심 지원체제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은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최종적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하여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 중심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자립생활주택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이 지역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차원에서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로 재입소하지 않도록 지원 기관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터는 시설퇴소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치구 및 운영사업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가 계획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표 5-1>과 같다.

<표 5-1> 지역 중심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구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자치구, 운영사업자)
방향	○시설퇴소 장애인 전환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있는 기반 마련
역할	○시설퇴소 장애인의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 체계 기능 강화 - 시설퇴소 장애인 전환계획 수립 지원 -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위탁 심의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점검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거주시설, IL센터, 보건소 등 지역 내 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	○'자치구-운영사업자'간 운영협약 체결하여 자치구 통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 재원확보 및 지원 감독 - 자립희망자 입주 결정 심의 참여 - 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 입주자 지원: 자립생활 서비스 설계관리 - 자립준비 단계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수립 운영

###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이용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항목은 이용자의 알권리이다(이봉주·김용득·김은정·김남희·서정민, 2012: 147).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개선을 위해서

는 인증(진입), 점검, 교육, 평가, 환류, 사후관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상시 확보되어야 한다(이봉주·김용득·김은정·김낭희·서정민, 2012: 154).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환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전 과정의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연계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의 탈시설과 고용을 위한 장애인 정책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가톨릭신문사(2003.01.26), “전국 주요 복지기관 탐방(3) 앵마우스 복지관 그룹홈”, 18면.
- 국가인권위원회(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
- 국민대통합위원회(2014), “새로운 ‘마을살이’로 다함께 행복합니다”, 「사례로 보는 국민대통합 2014」, 102-111.
- 김경애(2011),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시설거주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적 적응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3(3), 227-239.
- 김미옥(2011),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55-82.
- 김병하(2014),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의 삶”, 「장애인과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의 삶」,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4 정책 연구 및 세미나, 23-49.
- 김용득·박숙경(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5), 79-103.
- 김용득·황규인·허곤·이호선·김민지(2013),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전환을 위한 종합 매뉴얼: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의 설립과 개인별 지원의 실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김은하·박승희(2012), “개인중심계획: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계획 개발을 위한 적용”,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259-292.
- 김정화(2014), “토론문. 적어도 삼.세.판.”, 장애인과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의 삶, 한사랑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4 정책 연구 및 세미나, 57-61.

- 뉴스민(2015.01.21), “아띠, 지역주민들과 아이들 곁에 영원한 친구로...: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
- 박선아(2012),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평가척도 영향 변인 및 기준 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93-116.
- 박수경(2006),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237-264.
- 박승탁(2010), “그룹홈 거주 지적장애인 자립생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4), 323-354.
- 박진영(2011), “자립홈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5(2), 35-59.
- 박찬웅·이영희(2009), “전환지원 정착을 위한 개념 정립과 실행 과제”, 「지적장애연구」, 11(2), 269-292.
- 박형진(2010), “‘엠마우스’를 통해 본 천주교의 장애인복지운동”, 「종교와 사회」, 창간호, 253-290.
- 백은령·이명희·유영준·전혜인·최복천·김기룡·이혜영·김상은(2013),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충신대학교.
- 보건복지부·덕성여대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201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연구」.
- 서울시 공고(2012.8), “2012년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공고”.
- 서울시 보도자료(2012.11.29), “서울 4개구 ‘마을공동체’ 새로운 장애인 자립모델 제시”.
-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서종녀(2012), 「서울형 장애인 전환서비스 운영모형 개발 연구-서울시장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 서종녀(2014),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777-792.
- 오혜경 외(2012), 「2012년 장애인정책기획단 연구자료집」, 한국장애인개발원.
- 윤문주(2014), “장애인 자립 사례를 통한 마을이야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의 삶」,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4 정책 연구 및 세미나, 9-16.
- 이봉주·김용득·김문근(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서울:EM커뮤니티.
- 이봉주·김용득·김은정·김남희·서정민(201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서윤(201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형남(2014), “거주시설장애인의 지역이행과 저항에 관한 연구-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변화에 따른 시설 서비스 변화”,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향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 이형배(2015), “도시 속 행복한 마을살이: 대구 안심마을 사례”, 「국토」, 404, 88-92.
- 전정숙(2007), “지역사회통합 교육과정(CIS-C)이 발달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기능에 미치는 효과”,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9, 161-179.
- 한겨레(2011.12.07), “광주 지적장애인 생활공동체 ‘엠마우스’ 30돌 후미진 그늘 나와 어엿한 사회 일원 됐죠”.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013),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2013년 장애인 정책연구 공모사업 연구보고서 요약본」, 한국장애인개발원.
- 황규인(2011),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실천과제와 적용사례”, 「2011년 자립생활 실무자 과정」, 국립재활원.
- 황석웅·박송탁(2012),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기술교육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인-자기결정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4(4), 311-340.

Crewe, N. M. and Zola, I. K. (2001), **Independent Living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Press.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Centrepoint (2002), **Care leaving strategies: a good practice handbook**.

Whetstone, M. and Browning, P. (2002), *Transition: a frame of reference*, **AFCEC Online Journal**, Special Issu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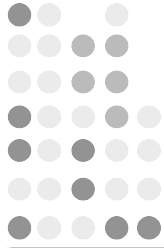
### <홈페이지>

서울시 <http://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http://happy.welfare.seoul.kr/happy/main.action>

엠마우스복지관(엠마우스집) <http://www.emmausw.or.kr/emmausw/sub01/corp08.php>

(검색일: 2015.8.6)



부

록







## 부록1. 2012년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자료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172호

### 2012년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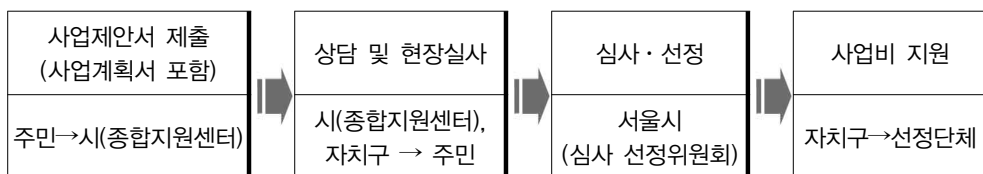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단위별 주민 및 풀뿌리 단체 등을 발굴·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육성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 : “장애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 사업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3.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제안기간 : 2012. 8월 ~ 연중
5. 제안방법

##### 가. 제안 절차



나. 접수처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온라인 접수 가능 : [dsoojeon@seoul.go.kr](mailto:dsoojeon@seoul.go.kr))

다. 제출 서류

- ①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제안서(붙임 1)
- ②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붙임 2) ※ 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서명 및 연락처 제출
- ③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일 경우 생략)
- ④ 사업계획서(붙임 3)

## 6. 대상사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를 형성, 장애인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사업

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만드는 공동체 회복분야

- 마을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장애·비장애인 함께 가꾸는 도시 농업, 장애인고용 생산품가게 및 카페 운영 등)

나.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및 역할 정립, 마을공동체 참여분야

- 마을공동체 내 기술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 방과 후 교실, 어학교실, 음악교실, 네일아트마용 자원봉사 등)

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을 통한 장애인 배려심 증진, 통합분야

- 지역 활동가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인식개선, 인권증진, 장애체 협교실 운영 등

라.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공동체 형성분야

-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구성, 함께 가는 문화여행프로젝트 등

마. 장애인 환경개선 분야

- 법적용 이전 시설이거나 법적용 예외 소규모 시설 등에 편의시설 지원 사업 등

바.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 7. 지원기간 : 지원단체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 사업 후, 선정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결정

## 8.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30%, 이후 사업 추진율에 따라 분기별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나. 지원규모 : 단체당 연 30백만원 내외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 자부담 시, 부담비율에 따라 선정 심사 시 우대

## 9.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원칙

가. 준비된 제안자에 우선 지원(공동체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다. 스스로 열정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선정

## 10. 선정기준 : 심사지표별 배점

가. 지표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나. 선정기준(안) : 붙임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11.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12.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내용 미공개)
  - 1차 심사는 8~9월 중 실시하여 결과 통보, 이후는 제안 접수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 13. 유의사항

- 가.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주도하는 장애인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서식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oojeon@seoul.go.kr](mailto:dsoojeon@seoul.go.kr), [ljm703@seoul.go.kr](mailto:ljm703@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 부록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라 함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2.5.22)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가정’은 시설외 장애인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자립생활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개정 2012.5.22)

-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5.22)

**제7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단,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활동지원급여(제목 개정 2012.5.22)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12.5.22)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제13조(추가 제공)**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7조(자립생활가정 제공)** 시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한다.

## 제6장 주거지원

**제18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00호, 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3. 시설퇴소 전략 실천 핸드북(영국 사례)

#### 1.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해야 할 시설퇴소 전체 단계

- 지역에서 어떻게 욕구에 대한 사정(assessment)과 점검(audit)을 하는가?
- 어떤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 전달은 융통성 있게 하는가?

#### 2. 욕구파악 이전 단계

- 준비 작업을 전달(delivering)하고 사정(assessing)하기 위해 합의된 체계가 있는가?
- 어떤 기관에서 준비 작업을 하는가?
- 준비 작업에 대한 계획과 전달(delivery)에 젊은이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Pathway Plans는 시설 퇴소 젊은이가 지역사회 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지원과 기술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것이 주요 역할)

#### 3. 시설퇴소 욕구반영 단계

- 해당 지역에서 시설퇴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 옵션 범위는 무엇인가?
- 시설퇴소 사람들에 대한 요구는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가?
- 공급 지원은 어떻게 젊은이의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가?

#### 4. 시설퇴소 단계

- 지역에서 준비과정과 시설퇴소 이후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 어떤 기관이 시설퇴소 사람들에게 전달 지원을 하고 있는가?
- 시설퇴소 사람들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책 체계가 있는가?

## 5. 지역사회 내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젊은이와 보호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성취를 향한 높은 포부가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 젊은이는 지역에서 어떤 교육, 훈련 및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 시설퇴소 사람들과 교육기관, 연계서비스 및 지역 고용주 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가?

## 6. 참여 단계

- 의사결정과정에서 젊은이가 어떻게 참여되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관점과 피드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가?
- 지역 내 어떤 기관이 청소년 참여를 개발하기 위한 최상인가?
- 불만을 품은 젊은이, 지역 밖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적은 집단을 의 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포함시키는가?

## 7. 정보제공

-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젊은이와 다른 기관에게 접근되어지는가?
- 젊은이는 어떻게 계획 및 정보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지역에서 어떤 서식(formats)이 필요한가?

## 8.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계획

-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 지역에서 파트너 기관들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향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예측 방법은 무엇인가?

## 부록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2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 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대상·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 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2618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연구** **- 시설외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

서울시복지재단 2015-15

**발행일** 2015년 8월 31일  
**발행처**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임성규  
**편집인** 김혜정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전화** 02-2011-0400  
**팩스** 02-2011-05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명문인쇄공사  
**I S B N** 978-89-6298-344-9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연구

-시설퇴소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신문로 2가 1-43)

전화 02-2011-04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비매품



9 788962 983449

ISBN 978-89-6298-344-9